

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
문화체육관광위원회
2021.11.22.(월) 10:00



시의회 보고 사항

(예비비 사용)

2021. 11.

서울시립미술관

소송 판결금 지급 관련 예비비 사용보고

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 추가 공사대금 및 간접비 청구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림

□ 예비비 사용 개요

- 추진근거 : 지방자치법 제129조(예비비) 및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
민사소송 판결금 예비비 사용 계획(총무과-6266, 6.11)
- 추진내용 : 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 추가공사대금 및 간접비 청구 판결금 지급
 - 사 건 : 2019나 2052110 공사대금
 - 내 용 : 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 추가공사대금 및 간접비 청구
 - 판결결과 : 화해권고 결정 (피고는 '21.6.30까지 원고에게 95백만원을 지급)
- 소요예산 : 95백만원

□ 예비비 승인액 및 사유

- 예비비 승인액 : 95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예산현액	승인액		승인일자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통계목		증	감	
일반예산 (예산담당관)	예비비	예비비	일반예비비 (801-01)	84,346,917	-	95,000	'21.6.16.
문화예술진흥 (시립미술관 총무과)	미술관 유지보수	시립미술관 유지관리	배상금등 (305-01)		95,000	-	

○ 예비비 사용 근거 및 사유

- (근거)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함
- (사유) 본 지출은 판결금 집행을 위하여 소요된 예산으로서 2021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

□ 예비비 집행 내역

- 민사소송 소송비용 지급 완료 : '21.6.21
 - 지급대상 : 주식회사 창의건설
 - 지급금액 : 95백만원
- 경희궁 철거 관련 소송 현황

연 도	사 건 명	사 유	진행상황
2018년	(1심)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670 공사대금 청구의 소	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(추가 공사관리비) 청구	→ 서울시 승소, 원고 완전 패소 (19.10.17.)
2019년	(항소심) 서울고등법원 2019나 2052110 공사대금 청구의 소		→ 화해권고 결정 ('21.5.6) ※ 화해권고금액 95백만원 지급 (21.6.21 서울시 ⇒ 창의건설)